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윤병국)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99.8.31) 및 동법시행령(2000.2.28)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소규모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율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교원위원 선출 자격을 당초 교원전체회의에서 교원 외에 직원까지 포함하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토록 하였고, 위원선출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학부모 및 교원 전체 회의에서의 추천절차를 생략하고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회의 개최는 연간 10회 이상, 30일 이내에서 8회 이상, 20일 이내로 축소하려는 것임.

○ 안 제3조제3항의 보궐선출을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현행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로 하고 있으나, 이는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결원이 1/4 이상이 되면 보궐 선출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잔여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위원을 보궐 선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서 보궐 선출을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로 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그러나 비록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이라도 운영위원회 회의개최가 곤란할 정도의 결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원만한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위원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궐선출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12조제3항의 회의개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연 10회 이상, 연 30일 이내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연 8회 이상 연 20일 이내로 축소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 운영된 이후 그간의 운영실태에 비취볼 때 연 10회 이상 개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방학 중 개최 곤란, 위원의 부담가중 등과 같은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회의 횟수와 일수를 다소 완화하려는 것은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며, 당초 6회 이상으로 축소하려던 것을 교육위원회 심사과정에서 8회로 수정된 바 있음.

다만,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도입의 취지와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와 정착이라는 측면과 현실여건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제도운영이라는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적정수준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요망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가. 수정이유

운영위원이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위원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궐선출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잔여임기 기간을 축소

나. 주요골자

○ 결원된 위원이 보궐선출 기간을 "잔여임기 6월 미만"에서 "잔여임기 3월 미만"으로 함. (안 제3조제3항)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15
----------	-----

2000년 7월 일
문교보사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1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8회 정례회 제6차 문교보사
위원회

(2000년 7월 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상갑 교육정책국장)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99.

1. 15 조례 제3561호)제정시 학생교육원사
용료 징수 규정이 있는 「서울특별시학생교

육원설치조례」(‘95. 9. 15 조례 제3217호)와 「서울특별시여학생생활교육원설치조례」(‘95. 9. 15 조례 제 3218호)가 폐지되고, 서울학생교육원 부설 대천임해수련본원이 개원(‘99. 9. 29)됨에 따라 학생 교육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여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용료 징수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사용허가 목적과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등의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하거나 사용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사용료 징수 한도액
(단위 : 원)

구분	단위 (기준)	금액	비 고
식 비	1인 1식	2,700	
간식비	1인 1일	1,300	해당되는 경우에만 징수
숙박비	1인 1일 (1실10명 기준)	2,000	실당 기준인원 미달시는 실당 20,000원 기준으로 1인당 금액 산출
일반 경비	1인당	2,700	해당되는 경우에만 징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윤병국)

- ‘99년 1월 15일 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제정으로 학생교육원설치조례와 여학생생활교육원설치조례가 폐지되면서 학생교육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징수근거규정이 없는 상태로 1년여 동안 교육청 규칙에 의하여 전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해 온 것은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위배되는바,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조례나 규칙 정비시 신중을 기하고 철저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임.

- 안 제3조와 같이 학생교육원 시설을 이용할 때 식비, 간식비, 숙박비, 기타 일반경비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하여 한도액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달리 징수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사용료의 징수가 자의적이고 불공평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다소 생소한 징수 한도액 개념 대신 별표에서 정한 일정액을 징수토록 하고,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칙으로 정하여 본원 또는 분원별로 따로 징수할 수 있게 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사용료의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사용료의 반환이나 변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특히 조례상의 징수 근거 없이 규칙에 의해 관례적으로 징수해 온 종전의 사용료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본 조례에 의거 징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 조치를 반드시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의 별표에 의하면 식비의 경우 본원, 여학생교육원본원 및 대성의 집 본원은 현행 2,100원 91인 1일)에서 2,700원으로 600원(28.6%)이 인상되고, 대천임해수련본원은 현행 3,000원에서 2,700원으로 300원(△10%)이 감소된 규모이며, 간식비의 경우에는 1,240원에서 1,300원으로 60원(4.8%)이 증액됨. 숙박비 2,000원과 일반경비 2,700원은 종전과 동일함.

사용료를 산출함에 있어 수지 분석이나 원가 비용분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행 학생교육원사용료 징수규칙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는 본원과 각 분원의 사용료액과 학생교육원과 유사한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를 비교 검토하여 이들 민간시설보다는 저렴하게 책정한 것으로써, 추후 운영과정에서 원가나 수지개념 측면이나 양호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과 아울러 보다 많은 학생들의 저렴한 시설이용편의 제공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한 사용료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4. 질 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 가. 수정이유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 중학생교육원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사용료의 시설별 차등징수, 감면, 반환 등 미흡한 사항을 추가 보완하고,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학생교육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의 범위 안에서 본원이나 분원별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교육규칙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학생교육원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에 퇴소한 경우 또는 과오납한 경우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안 제5조)
 - 학생교육원의 이용자가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도록 함.(안 제7조)
 - 이 조례 시행 전에 조례상의 근거 없이 이미 부과 징수된 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 징수된 것으로 간주함.(안부칙 제2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18
----------	-----

2000년 7월 일
문교보사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15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8회 정례회 제6차 문교보사

위원회

(2000년 7월 5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노미혜 여성정책관)
- 가. 제안이유
 - 여성의 능력개발 및 건전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여성발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공공시설설치조례, 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여성발전센터사용료등징수조례, 여성발전센터운영규칙의 내용 증 조례로 규정함이 타당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규정하여 여성발전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1. 여성발전센터 설치근거를 모자복지법에서 여성발전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각 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표기함.(안 제1조 및 제2조).
 - 2. 여성발전센터의 주요기능을 교육사업, 보육사업, 취업촉진사업, 상담사업, 지역활동지원사업 및 기타 여성의 복지향상·사회참여·여가선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기숙사·도서관·수영장 등)의 운영으로 정함.(안 제3조).
 - 3. 여성발전센터의 시설별·사업별 이용정원은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규모 및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여성발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4. 여성발전센터 이용우대자 및 이용우대자에 대한 지원방법을 정함.(안 제6조).
 - 5. 여성발전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함.(안 제7조).
 - 6. 기숙사 이용기간을 기술교육생 1년, 기타 7일로 하며, 기숙사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함.(안 제8조).
 - 7. 보육실 운영기간 및 시간을 정하고, 보육실 이용아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식 또는 간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8. 여성발전센터의 교육실, 회의실 또는 강당 등을 교육의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민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